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상정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개정이유

- 일반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대신 동기능전환 업무보장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구별행정6급각1명)을 승인함에 따라
-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동기능전환 담당 보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 총 정원 : 1,959명(안 제2조)
 - 집행기관 : 1,930명 → 1,933명(+ 3)
 - 의 회 : 26명
- 정원 증원내역 : 3명(행정6급 : 3명)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956명	1,959명	+ 3
집행기관	1,930명	1,933명	+ 3
의 회	26명	26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승인 받은 팀장 3명을 어느 부서에 배정 받았는지?	<input type="radio"/> 3개 구청 총무과에 배정 되었습니다
<input type="radio"/> 의회에 홍보팀이 없는데 만들 의향은 없는지?	<input type="radio"/> 현재는 어렵고 향후 정부 기구개편 작업시 맞춰 검토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5호
의결 년월일	2003. 7. 15 (제105회)

제출년월일 : 2003. 7.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일반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대신 동기능전환 업무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구별 행정6급 각1명)을 승인함에 따라
-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동기능전환담당 보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 총 정원 : 1,959명
·집행기관 : 1,930명 → 1,933명(+3) ·의 회 : 26명
- 정원 증원내역 : **3명** (행정6급 : 3명)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956명	1,959명	+3
집 행 기 관	1,930명	1,933명	+3
의 회	26명	26명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956명”을 “1,959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930명”을 “193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956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30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 -----</p> <p><u>1,959명</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33명</u></p> <p>2. (현행과 같음)</p>